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2일
- 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3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박인수)

□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 권한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, 본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“소속공무원” 정의에서 “의회사무국(의회 의원 포함)” 삭제(안 제2조1호)
- 나.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 해야함을 신설(안 제8조3항)
- 다.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조7항)
- 라. 지방의회 의장과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~ 제104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 결과(2021. 12. 15. ~ 2022. 1. 4.)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의견 수용¹⁾

- 제8조제3항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 포함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개정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 간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,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

1) 서울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결과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도 동일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,
-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의견을 따라 조례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함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1호에 포함되어 있던 “의회사무국(의회 의원포함)” 삭제
- 안 제8조3항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 명시
- 안 제8조7항에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
- 안 제11조에서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

다. 종합 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,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 대상범위에 의회사무국(의회 의원포함)을 삭제하는 대신 양 기관 간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함을 신설하는 것으로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, 후생복지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은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
- 선택적 복지제도,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는 구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에 구청 및 의회 소속 직원(의회 의원 포함)이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제103조,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4조(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) ① 사무처장·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사무직원의 임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을 적용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

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0., 2021. 10. 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 5. 18.>